

2016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운영기준

1. 일반 교내근로

☐ 선발 기준

- 정규학기 내인 학생 중 소득순위가 낮은 순
- 소득순위가 같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(취득평점 하한선을 설정)을 기준하여 선발인원을 지정하고 각 근로지에서 개인별 근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선발 한다
- 단, 특정부서(장학취업팀, 창업지원센터, 박물관, 건강센터)의 근로장학생 선발은 소득분위가 낮은 순에서 성적 제한 없이 특정학과생(예 : 사학, 간호학 등) 또는 민원업무에 따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하여 선발한다.

☐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

-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

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
- 초기 선발기준에 준한다

2.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

☐ 선발 기준

- 정규학기 내인 학생 중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면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된 학생

- 단,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, 장애학생도우미지원유형에 관심있는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도우미로 추가 신청하는 경우,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적이 높은 순에서 소득분위에 제한없이 선발될 수 있다.

□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

-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과 대학생활 지원에 있어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.

□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
- 초기 선발 기준에 준한다.

□ 장학금 지급 기준

구 분	도우미 활동 내용	시간(횟수)	시 급
학업지원	동일 강의 수강하며 필기 공유	1시간 (1학점=1시간)	8,000원
	동일 강의 수강하며 강의속기, 필기정리&공유	1시간	
	청강하며 강의대필, 필기정리하여 제공	(1학점=1시간, + 정리시간)	
	강의시간 외 강의관련 튜터링	1시간	
	조모임 및 과제수행 지원	1시간	
	시험대필 지원	1시간	
	특강 지원	1시간	
	동일 강의 수강하며 필기구 준비&정리	6회	
이동지원	동일 강의 수강하며 강의시간 전후 이동보조	4회	
	강의 수강하지 않으며 강의시간 전후 이동보조	2회	
생활지원	식사보조	1회	
	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(화장실이용 보조)	2회	
	기숙사 룸메이트 지원	1시간	
	- 발달장애학생 지원: 1일 1시간 적용 - 전동휠체어 이용학생 지원: 1일 2시간 적용		
교재제작	교재제작	1시간	
기 타	기타 지원 활동	1시간	

3. 일반 교외근로

☐ 선발 기준

- 전공 관련 업무실습을 통한 취업연계 확대 방안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우선한다.
- 동일한 조건에서는 소득순위가 낮고 이수학기는 높은 순으로 배정하고 기업별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선발한다. 동일 순위에서는 근면성실함을 우선한다.
- 창업기업의 상품 개발 등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근무를 한 기존 학생을 우선한다.

☐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

- 벤처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, 전공 관련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초기 창업 기업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설계에 도움을 받는다

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
- 초기 선발기준을 준한다

【작성방법】

- 1) 전체 장학생, 근로지별, 학과별 우선순위 선발 등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
- 2) 대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다음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기술
- 3)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의 경우 장학생 선발기준, 도우미지원형, 도우미 활동시간 인정단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
- 4) 재단이 제시한 기본요건 및 추가적인 대학자체 기준에 대하여,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된 이유와 필요성 기술